

2017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대회규정

공고일 2017. 4. 24.

제 1 장 통 칙

- 1.1 대회명칭
- 1.2 규정목적
- 1.3 대회구성 및 경연분야
- 1.4 대회방식
- 1.5 대회문제

제 2 장 경연 준비

- 2.1 참가자격
- 2.2 참가신청
- 2.3 서면심사
- 2.4 서면의 형식
- 2.5 본선 및 결선의 진행

제 3 장 재판부 및 평가

- 3.1 재판부의 구성
- 3.2 심사
- 3.3 감점

제 4 장 시상 및 부상

- 4.1 시상
- 4.2 부상
- 4.3 기타

제 5 장 부칙

제1장 통칙

1.1 대회 명칭

본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대회의 명칭은 “2017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2017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ot Court)”로 한다.

1.2 규정 목적

본 규정은 국제인권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국내외 인권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 향후 인권 법률가나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 NGO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법률 이론·변론 실무 및 법적 논증 등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의 참가자에 적용될 사항을 마련함에 있다.

1.3 대회 구성 및 경연분야

1.3.1 대회는 1차 서면심사 및 2017년 8월 26일 2차 본선(오전), 3차 결선(오후)으로 구성된다.

1.3.2 경연분야는 국제인권분야이다.

1.3.3 언어는 한국어로 진행한다.

1.4 대회 방식

1.4.1 서면심사

참가자는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해당 진정인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팀을 결정한다.

1.4.2 본선 및 결선

참가자는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변론서를 준비하고, 추첨으로 진정인과 국가의 입장을 결정하여 본선 및 결선 경연을 치른다.

1.5 대회 문제

대회 문제는 국제인권 분야의 다양한 쟁점을 지닌 문제로, 중요한 국제인권법 분야의 판례나 국제인권관련 사례들과 연결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2장 경연 준비

2.1 참가자격

2.1.1 참가자격: 국내·외 대학생 또는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청년 (만 29세 이하 대학원생도 참여 가능)

2.1.2 팀 구성: 학력, 전공 및 소속 학교, 성별과 무관하게 2인 또는 3인 1팀으로 자유롭게 구성한다.

2.1.3 대회 공고일(2017년 4월 21일) 기준 참가자격에 부합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2.2 참가신청

대회에 참가하려는 팀은 공고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3 서면심사

2.3.1 서면심사

모든 참가팀은 1차 서면 제출기간 종료 후 서면심사 절차를 거친다.

2.3.2 서면의 제출

참가팀은 서면심사를 위한 문제를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및 대회 공식카페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그에 대한 준비서면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3.3 본선 진출팀의 선정 및 공고

준비위원회는 2017년 7월 25일 오후 4시를 기해 확정된 본선 진출팀을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및 대회 공식 카페에 공고함과 아울러 진출팀에게 전자문서로 개별 통지한다.

2.3.4 본선 진출팀의 수

준비위원회는 16개 팀 내외에서 본선 진출 팀을 확정한다.

2.4 서면의 형식

1차 서면의 형식은 서면 경연 규칙에 따른다.

2.5 본선 및 결선의 진행

본선 및 결선의 진행은 구두변론으로 하며, 본선 및 결선 경연 규칙에 따른다.

제3장 재판부 및 평가

3.1 재판부의 구성

재판부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학자 및 실무 전문가로 그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3.2 심사

3.2.1 1차 서면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의 적절성과 창의적 해석
-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 인권 논점별 가점 논점 심도별 가점
- 진정인과 국가의 변론서간 균형성
- 인권친화적 개념과 용어 사용
- 대회규정 및 절차의 준수

3.2.2 본선 및 결선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의 적절성과 창의적 해석
-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 변론의 적정성 : 전달력 / 팀워크 / 독창성
-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 이해도 / 정확도 / 순발력
- 변론 태도의 적정성 : 상대방 존중과 절차 준수 및 경청

- 인권친화적 변론 용어 사용
- 대회규정 및 절차의 준수

3.3 감점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대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대회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총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시상 및 부상

4.1 시상

4.1.1 최종 1위 팀부터 4위 팀을 시상한다.

- 1위 팀에게 법무부 장관상을, 나머지 팀에게 공동주최 기관장상을 수여한다.

4.1.2 서면점수 우수팀을 시상한다. (상위 2개 팀 이내 선발)

- 서면 우수상은 위 법무부 장관상 및 공동주최 기관장상의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수여한다.

4.2 부상

4.2.1 1위 팀에게는 국내 또는 국제 인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4.2.2 주최 기관은 위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4.3 기타

그 밖의 시상 및 부상과 관련하여서는 본선 및 결선 경연 규칙을 따른다.

제5장 부칙

본 규정은 공지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